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

# 국민 취업지원제도

## 이름

전화문의  
**02)990-7744**

### □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
\*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

### □ 지원대상

I 유형	II 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amp;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</li> <li>•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저소득층) 중위소득 50% 초과 ~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</li> <li>• (청년) 18세 ~ 34세</li> <li>• (중장년) 중위소득 60~100% 이하</li> </ul>

- 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 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  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\* (2021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중위소득 50%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중위소득 120%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	7,954,324	8,996,638

- (취업경험)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  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 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## 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	I 유형(40만명)				II 유형(19만명)			
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	
		청년	비경험	저소득층	특정계층			
지원대상	연령	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						
	소득	중위소득 50% ↓	중위소득 120% ↓	중위소득 50% ↓	중위소득 50~60% ↓	x	x	중위소득 60~100% ↓
	재산	3억원 ↓	3억원 ↓ *고시로 규정 가능	3억원 ↓	x			
	취업경험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	x	x	x			
지원내용 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	취업지원서비스	•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						
	소득 지원	구직촉진수당	•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× 6개월)			x		
		취업활동비용	x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	
지원기간	• 12개월 (6개월 연장가능)		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계급여수급자</li> <li>•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li>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/ul>							

### ○ 특정계층

-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⑫ 니트(NE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(신청방법) 온라인 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(신청장소)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5 201호, 202호 **★희망위탁기관 : 잠모아 북부지점 선택!**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제출서류)
  -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- (필요시 추가서류)
    -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  -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-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· 재산 · 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

**문의 02)990-7744**

북부지점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5 201호, 202호



**(주)잠모아**

민간위탁기관 · 고용서비스 우수기관





# 일경험 프로그램 안내

## 일경험 프로그램은

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·직무향상을 지원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

### 사업개요

####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이란.

일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
####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이란.

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향상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
### 참여대상 및 사업내용

구분	참여대상	사업 내용
구인업체	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NGO·공공기관 *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 에너지산업분야, 성장유망업종, 인증사회적기업, 혁신형 중소기업은 5인 미만 가능 (인턴형은 신청 1개월 전 감원 없음)	1. 인턴형 내용 참여자 기준 최대 3개월 일경험 지원 * 1일 8시간 원칙  2. 체험형 내용 최대 30일(휴무 제외) 일경험 지원 * 1일 4시간, 1주 20시간 원칙
구직자	<b>체험형</b>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적합자 *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참여 <b>인턴형</b>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적합자 *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참여	

### 지원내용

#### 구직자 지원내용

- 인턴형 : 최저임금 기준 최대 월 182만원(구직촉진수당 미지급)
- 체험형 : 참여수당(교통비·식대 등)일 2.1만원(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)

#### 구인업체 지원내용

- 인턴형/체험형-멘토링 수당 1명당 10만원 지급
- 구인업체는 참여자 당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해당분만 부담

### 접수/문의처

구인업체 접수처 : 온라인(www.work.go.kr/kua)  
문의처 : 02)990-7744 (주)잡모아 북부지점

